

우리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우리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우리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호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우리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http://www.wooriam.kr 및 http://dart.fss.or.kr 참조

4. 작성 기준일 : 2024년 02월 29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4년 04월 05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 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http://wooriam.kr**),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자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시 해당 펀드가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2024.02.29)

우리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 호 [펀드 코드: 36188]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우리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국내채권 및 주식**에 투자하여 **이자율 변동 위험, 가격 변동성, 유동성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우리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호** 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투자신탁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며, 투자신탁자산총액의 35%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여 추가적인 자본이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권의 경우, 경제성장 전망, 예상 인플레이션, 금리변동, 환율전망 등 거시경제변수를 고려하여 채권의 장, 단기간의 적정 투자비율을 유지하며 운용합니다. 주식의 경우, "Bottom-up"방식에 의거하여 개별종목 중심으로 투자하며, 미래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거래되고 있는 종목에 투자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우리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호	없음	1.3250	0.8000	1.1400	1.3309	136	276	422	729	1,601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클래스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2023.03.01~2024.02.29)	최근 2년 (2022.03.01~2024.02.29)	최근 3년 (2021.03.01~2024.02.29)	최근 5년 (2019.03.01~2024.02.29)	설정일 이후
우리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호	2003.02.24	7.79	2.24	0.32	3.63	5.54
비교지수		6.01	1.88	0.32	2.84	4.81
수익률 변동성		4.75	5.54	5.42	6.64	6.28

(주1) 비교지수 : KOSPI(30%)+ KBP_MSB(7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 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호석	1989	책임 (과장)	14	1,253	8.03	2.15	6.92	1.86	3년 3개월
서보민	1984	책임 (팀장)	36	44,354	7.71	2.21			9년 9개월
노기호	1984	부책임 (차장)	22	2,425	8.23	0.88			10년 6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은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주식운용1팀과 채권1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 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

		탁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채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당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17시 이전) 다음 영업일 기준가 매입 (17시 경과 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17시 이전) 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17 시 경과 후) 4 영업일 기준가 5 영업일 지급
환매 수수료	• 1 년 미만 : 이익금의 70% • 2 년 미만 : 이익금의 50% • 3 년 미만 : 이익금의 30% ※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http://www.wooriam.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 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우리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211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am.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효 력 발 생 일	**2024년 04월 05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해당 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www.wooriam.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wooriam.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wooriam.kr)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우리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 호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3618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미해당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 조좌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우리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 호 (펀드코드:36188)

기준	집합투자업자	법정분류	특수형태	투자기구	주된 투자대상자산	운용규제
내용	우리자산운용	증권	-	투자신탁	채권	해당사항없음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자	내 용
2003 년 2 월 24 일	최초설정
2006 년 2 월 20 일	약관변경
2006 년 3 월 3 일	약관변경
2006 년 12 월 20 일	약관변경 : 표준약관 개정사항 반영
2008 년 10 월 7 일	약관변경 : 세제 관련 법 개정 반영
2009 년 4 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 Templeton 장기주택마련 혼합투자신탁 제 1 호 → 템플턴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 호
2011 년 11 월	펀드명칭 변경 : 템플턴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 호 → 프랭클린템플턴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 호
2012 년 9 월 19 일	채권평가회사 추가
2013 년 10 월	펀드명칭 변경 : 프랭클린템플턴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 호 → 프랭클린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 호
2014 년 12 월	투자대상자산 :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추가
2016 년 1 월	채권평가회사 추가
2016 년 4 월 1 일	운용전문인력 변경
2016 년 7 월 2 일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2016 년 7 월 30 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6 년 11 월 7 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SC 은행 펀드서비스부 → 우리펀드서비스
2017 년 6 월 1 일	운용전문인력 변경
2018 년 3 월 22 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8 년 7 월 3 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9 년 7 월 17 일	운용전문인력 변경(단독운용으로 변경: 정무일, 주민근 → 정무일)
2019 년 8 월 29 일	운용전문인력 변경(단독: 정무일 → 책임: 강정구, 부책임: 백상훈)
2019 년 9 월 25 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2020 년 4 월 22 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2021 년 3 월 9 일	결산시 산정한 변동성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5 등급→4 등급)
2021 년 9 월 7 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책임 운용전문인력 변경 (강정구→최혁재)

2021 년 10 월 6 일	분할합병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명칭변경
2022 년 04 월 22 일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2 년 06 월 24 일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2 년 10 월 26 일	이익분배조항 변경(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23 년 04 월 07 일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4 년 04 월 05 일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1 37 층, 44 층 02-2118-05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작성기준일 현재)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채권혼합형)**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이호석	1989	과장	14	1,253	8.03	2.15	6.92	1.86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3 년 3 개월			2016.03 ~ 2018.04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 2018.04 ~ 2019.02 비욘드자산운용 리서치 2019.04 ~ 현 재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채권혼합형)**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서보민	1984	팀장	36	44,354	7.71	2.21	6.92	1.86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9 년 9 개월			2010.05 ~ 2011.08 한국자산평가 외화채권평가 2011.09 ~ 2020.06 신한 BNPP 파리바자산운용 채권운용					

	2020.06 ~ 현 재 우리자산운용 채권운용

주1) 이 투자신탁은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주식운용1팀과 채권1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채권혼합형)**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노기호	1984	차장	22	2,425	8.23	0.88	6.92	1.86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10 년 6 개월			2009.08 ~ 2011.09 현대차증권 PI 2011.10 ~ 2015.05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주식운용 2015.06 ~ 2018.09 마이다스자산운용 주식운용 2018.10 ~ 현 재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					

주1) 이 투자신탁은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주식운용1팀과 채권1팀이 담당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성명	수 (개)	운용규모 (억원)
노기호	1	254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최근 3 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운용전문인력	직위	운용 기간
강정구	책임운용전문인력	2019.08.29 ~ 2021.09.06

백상훈	부책임운용 전문인력	2019.08.29 ~ 2021.10.05
최혁재	책임운용 전문인력	2021.09.07 ~ 2021.10.05
이호석, 김진평	책임운용 전문인력	2021.10.06 ~ 2022.06.23
노기호	부책임운용 전문인력	2021.10.06 ~ 현 재
이호석, 서보민	책임운용 전문인력	2022.06.24 ~ 현 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채권혼합)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투자신탁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며, 투자신탁자산총액의 35%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여 추가적인 자본이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밖에도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유동성자산에도 투자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	주요 내용
1.	주식	35% 이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2.	채권	50% 이상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단, 주식관련사채권 및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 미만 사채권은 제외)
3.	어음	35%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단, 취득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함)
4.	자산유동화증권	6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6.	수익증권	5% 이하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30%까지 투자 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189 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 196 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7.	증권의 대여 [1)]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 총액의 50%이하	

8.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채권관련 파생상품
9.	장외파생상품	아래 나.의 법규상 투자제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 채권관련 파생상품
10.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11.	증권의 차입 2)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2.	단기대출,금융기관 예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	
13.	기타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5 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나.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다.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라.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1~5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와 3.의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규정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 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인 3 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 내용	예외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ㅇ자산총액의 6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ㅇ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ㅇ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당해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	ㅇ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ㅇ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ㅇ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ㅇ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이해관계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단기대출 나.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주식투자전략

(1) 장기적으로 신탁재산의 35%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여 추가적인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운용합니다

(2) 50 년 이상 탁월한 성과를 입증 받은 존 템플턴경의 투자철학인 "Bottom-up"방식에 의거하여 개별종목 중심으로 투자하며, 미래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거래되고 있는 종목에 투자합니다

(3) 내재가치가 높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여, 고객의 자산 증식을 도모합니다

나. 채권투자전략

(1) 장기적으로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채권에 배분하여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도모합니다

(2) 경제성장 전망, 예상 인플레이션, 금리변동, 환율전망 등 거시경제변수를 고려하여 채권의 장, 단기간의 적정 투자비율을 유지하며 운용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KOSPI(30%)+KBP_MSB(70%)

* KOSPI: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한국종합주가지수로 국내 주식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 *KBP_MSB: 한국자산평가(KAP)에서 제공하는 매경BP종합채권지수 중 물가연동국고채를 제외한 국내 통화안정채권을 가중평균하여 한국펀드평가(KFR)에서 산출한 지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 위험	✓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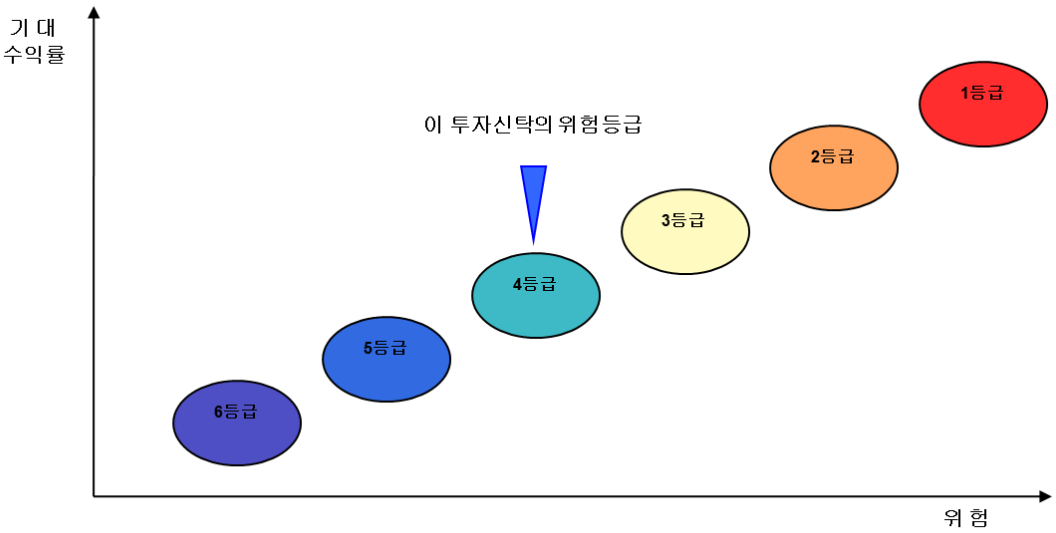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 채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 당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 수익자가 중도 환매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 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조기환매위험	✓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수익률 변동성은 5.17% 입니다. 수익률 변동성이란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지난 156주간의 집합투자기구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입니다. 매 결산시마다 직전 3년(156주)의 주간수익률 표준편차를 재측정하게 되며, 이 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투자신탁은 당사가 정의한 6가지 투자위험등급들 중에서 4등급에 해당하는, 당사의 투자위험등급상 네번째로 높은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사의 투자신탁에 투자하려는 고객들 중에서 보통의 투자위험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며, 채권 투자로부터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주로 추구하면서 동시에 일정부분은 주식의 위험과 수익을 함께 추구하려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채택한 위험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분류 (설정 후 3년 경과 펀드)

등급	1	2	3	4	5	6 (저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 1)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합니다.

(주 2)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3) 실제 측정된 변동성이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대상자산 기준 위험등급분류로 위험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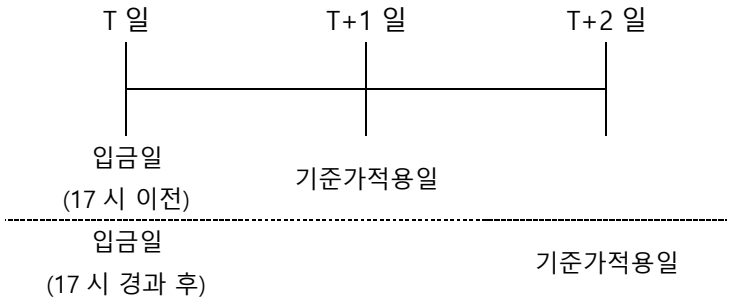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1,000 원)을 적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1940년 투자회사법(the Investment Company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이 적용되는 미국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본 수익증권은 미국 및 그 관할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법령 등에 따라 미국 등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투자신탁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장래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신청서 양식에 비미국 주소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해당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의 미국인 지위의 변동을 달리 통지 받지 않는 한 해당 투자자는 비미국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투자자의 진술과 보장으로 여겨집니다.

"미국인"이란 1933년 미국 증권법의 'Regulation S' 상의 의미 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의한 바에 따라 미국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본 용어의 정의는 법규, 규정, 또는 사법/행정 기관의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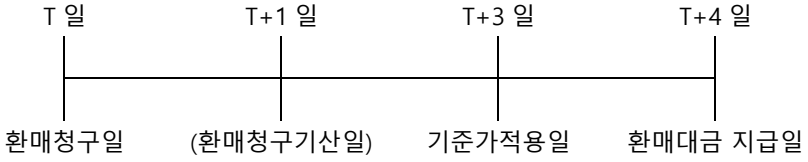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나)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 1 년 미만 : 이익금의 70%
- 2 년 미만 : 이익금의 50%
- 3 년 미만 : 이익금의 30%

※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산정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공고·게시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시. 다만, 최초설정일[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등	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평가할 수 있음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증권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은 그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①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1 년 미만 : 이익금의 70% 2 년 미만 : 이익금의 50% 3 년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집합투자업자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4650%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8000%
신탁업자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4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200%
기타비용(사유발생시) 1)	순자산총액의 연 0.0059%
총 보수•비용 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1.3309%**
(동종유형 총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1400%
합성 총 보수•비용 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1.3309%**
증권거래비용 2)	순자산총액의 연 0.4226%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탁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부동산감정평가보수,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등

주2)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21,550,321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정전인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추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으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이 설정된 후에는 발생된 비용을 기재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3.02.24 ~ 2024.02.23]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 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비용 1)

(단위: 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우리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 (채권혼합) 1 호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136	276	422	729	1,601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	136	276	422	729	1,601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1)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
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1 조에 따른 세제혜택

가. 2010 년 1 월 1 일부터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가입한 투자자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만 18 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 99 조 제 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 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가입한도	분기당 300 만원 이내 (모든 금융기관 합산)
계약기간	7 년 이상 (당해 기간 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는 경우에 한함)
혜택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7 년 이상 가입시)
감면세액 추징	-당해 저축의 계약일로부터 7 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 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나. 2009 년 12 월 31 일까지 가입한 투자자

구분	주요내용

<table>
<tr><td>가입대상</td><td>만 18 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 99 조 제 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 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td></tr>
<tr><td>가입한도</td><td>분기당 300 만원 이내 (모든 금융기관 합산)</td></tr>
<tr><td>계약기간</td><td>7 년 이상 (당해 기간 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는 경우에 한함)</td></tr>
<tr><td>혜택</td><td>1.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7 년 이상 가입시)
2. 소득공제 : 당해 저축 불입액의 40%
-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 52 조 제 2 항 내지 제 5 항, 동법시행령 제 112 조
- 한도 : ⅰ) 아래 표 1 과 2 를 합산하여 연간 300 만원 한도
ⅱ) 아래 표 1 과 2 및 3 을 합산하여 연간 1,000 만원 한도.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 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1,500 만원 한도임
<table>
<tr><th>구분</th><th>소득공제비율</th><th>내용</th></tr>
<tr><td>1.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공제</td><td>저축불입액의 40%</td><td>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1)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
2)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td></tr>
<tr><td>2. 주택임차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td><td>원리금상환액의 40%</td><td></td></tr>
<tr><td>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td><td>이자상환액</td><td></td></tr>
</table>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에 의거, 2010 년 1 월 1 일부터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 천 8 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td></tr>
<tr><td>감면세액 추징</td><td>-당해 저축의 계약일로부터 7 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td></tr>
</table>

<table>
<tr><td></td><td>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 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td></tr>
<tr><td>소득공제 추징</td><td>저축가입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불입총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 만원 한도)을 추징합니다.
-1 년 이내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불입총액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60 만원 한도)을 추징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당해 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80 조 제 5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 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td></tr>
<tr><td>감면받은 세액 추징 관련 예시</td><td>-매월 50 만원을 적립한 경우
<table>
<tr><th>해지일(저축가입일로부터)</th><th>배당소득세</th><th>소득공제</th><th>내용</th></tr>
<tr><td>10 개월</td><td>추징</td><td>40 만원 추징</td><td>소득공제추징세액 : 1 년 이내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불입총액의</td></tr>
</table></td></tr>
</table>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60 만원 한도)
	3 년	추징	72 만원 추징	소득공제추징세액 : 5 년 이내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불입총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 만원 한도)
	6 년	추징	추징하지 않음	5 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득공제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고 배당 소득감면세액만 추징함
	8 년	추징하지 않음	추징하지 않음	7 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득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감면세액 추징하지 않음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국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21기 (2023.02.24 ~ 2024.02.23)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20기 (2022.02.24 ~ 2023.02.23)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9기 (2021.02.24 ~ 2022.02.23)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21기 (2024.02.23)	제20기 (2023.02.23)	제19기 (2022.02.23)
운용자산	5,101,352,603.	5,054,013,844.	5,386,819,254.
증권	4,497,790,210.	4,770,951,819.	4,866,003,536.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603,562,393.	283,062,025.	520,815,718.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44,867,799.	40,756,354.	137,748,986.
자산총계	5,146,220,402.	5,094,770,198.	5,524,568,24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52,973,419.	16,646,795.	48,627,305.
부채총계	52,973,419.	16,646,795.	48,627,305.
원본	5,093,496,589.	5,437,249,809.	5,696,436,952.
수익조정금	-11,938,536.	11,173,218.	6,625,158.
이익잉여금	11,688,930.	-370,299,624.	-227,121,175.
자본총계	5,093,246,983.	5,078,123,403.	5,475,940,935.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21기 (2023.02.24 ~ 2024.02.23)	제20기 (2022.02.24 ~ 2023.02.23)	제19기 (2021.02.24 ~ 2022.02.23)
운용수익	406,986,734.	-90,578,888.	-149,580,319.
이자수익	75,122,280.	58,578,111.	58,316,168.
배당수익	23,157,080.	32,059,851.	32,125,945.
매매/평가차익(손)	308,707,374.	-181,216,850.	-240,022,432.
기타수익	120,847.	7,580.	1,181,523.
운용비용	-67,573,372.	-68,948,634.	-78,383,829.
관련회사 보수	-67,573,372.	-68,948,634.	-78,323,345.
매매수수료	0.	0.	-60,484.
기타비용	-302,330.	-316,010.	-338,550.
당기순이익	339,231,879.	-159,835,952.	-227,121,175.
매매회전율	340.22	533.92	216.89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단위 : 백만원]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11,426.52	9.99	0.09	18,522.06	17.55	0.09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3,876.96	0.00	0.00	6,549.47	0.00	0.00
부동산	0.00	0.00	0.00	0.00	0.00	0.00
장내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장외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15,303.49	9.99	0.07	25,071.53	17.55	0.07

(주1)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불가한 경우 제외

[단위 : 백만원, 주]

주식의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117,626	5,561.93	132,343	5,868.64	1,724.98	340.22	31.85

(주1)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분류 적용(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21기(2024.02.23) 금 액		제20기(2023.02.23) 금 액		제19기(2022.02.23)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603,562,393.		283,062,025.		520,815,718.
1. 현금및현금성자산	603,562,393.		283,062,025.		520,815,718.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0.		0.		0.	
대출채권		0.		0.		0.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어음	0.		0.		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4,497,790,210.		4,770,951,819.		4,866,003,536.
1. 지분증권	1,713,280,820.		1,731,073,550.		1,801,500,406.	
2. 채무증권	2,784,509,390.		3,039,878,269.		3,064,503,130.	
3. 수익증권	0.		0.		0.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산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 타 자 산		44,867,799.		40,756,354.		137,748,986.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8,751,127.		0.		108,490,777.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26,084,985.		20,318,034.		9,382,067.	
4. 미수배당금	10,031,687.		20,438,320.		19,876,142.	
5. 기타미수입금	0.		0.		0.	
6. 기타자산	0.		0.		0.	
7.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5,146,220,402.		5,094,770,198.		5,524,568,240.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운용부채	0.		0.		0.	
기 타 부 채		52,973,419.		16,646,795.		48,627,305.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36,248,644.		0.		30,146,886.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0.		0.		0.	
4. 수수료미지급금	16,724,775.		16,646,795.		18,480,419.	
5.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6. 기타미지급금	0.		0.		0.	
부 채 총 계		52,973,419.		16,646,795.		48,627,305.
자 본						
1. 원 본	5,093,496,589.		5,437,249,809.		5,696,436,952.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11,938,536.		11,173,218.		6,625,158.	
3. 이월잉여금	11,688,930.		-370,299,624.		-227,121,175.	
(발행좌수 당기: 5,093,496,589 좌	이익잉여금	11,688,930.		-370,299,624.		-227,121,175.
전기: 5,437,249,809 좌	수익조정금	0.		0.		0.
전전기: 5,696,436,952 좌)						
(기준가격 당기: 999.95 원						
전기: 933.95 원						
전전기: 961.29 원)						
자 본 총 계		5,093,246,983.		5,078,123,403.		5,475,940,93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146,220,402.		5,094,770,198.		5,524,568,240.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21기(2023.02.24 ~ 2024.02.23 금 액		제20기(2022.02.24 ~ 2023.02.23 금 액		제19기(2021.02.24 ~ 2022.02.23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98,400,207.		90,645,542.		91,623,636.
1. 이 자 수 익	75,122,280.		58,578,111.		58,316,168.	
2. 배당금수익	23,157,080.		32,059,851.		32,125,945.	
3. 수수료수익	0.		0.		955,052.	
4. 기타투자수익	120,847.		7,580.		226,471.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579,790,495.		332,374,256.		192,001,421.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559,269,554.		315,003,108.		191,013,903.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20,520,941.		17,371,148.		987,518.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차익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71,083,121.		513,591,106.		432,023,853.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259,773,963.		469,332,953.		365,635,173.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11,309,158.		42,397,303.		66,388,68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0.		1,860,85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67,875,702.		69,264,644.		78,722,379.
1. 운용수수료	23,714,430.		24,197,068.		27,487,061.	
2. 판매수수료	40,799,016.		41,629,364.		47,289,567.	
3. 수탁수수료	2,039,951.		2,081,468.		2,364,478.	
4. 사무수탁수수료	1,019,975.		1,040,734.		1,182,239.	
5. 지급수수료	302,330.		316,010.		399,034.	
6.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339,231,879.		-159,835,952.		-227,121,175.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66600983		-0.02939647		-0.039870743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설정(발행)		회계기간 중 환매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2.24 ~ 2024.02.23	54.37	50.78	0.76	0.73	4.20	4.07	50.93	50.93
2022.02.24 ~ 2023.02.23	56.96	54.76	1.01	0.93	3.60	3.31	54.37	50.78
2021.02.24 ~ 2022.02.23	56.59	56.59	9.80	9.78	9.42	9.34	56.96	5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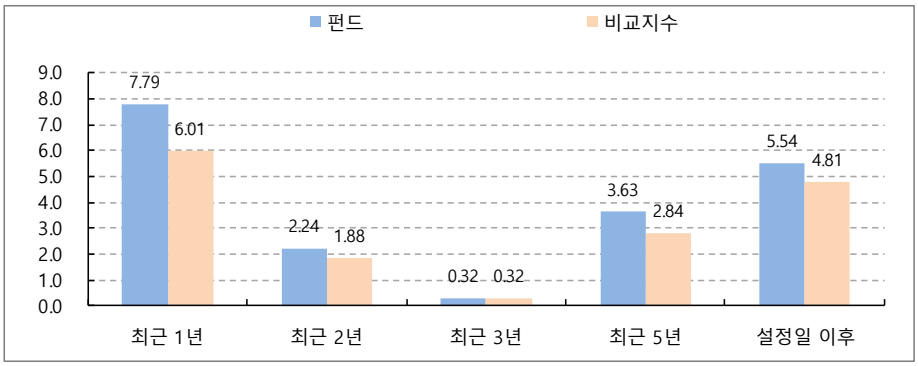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수익률은 신고서 또는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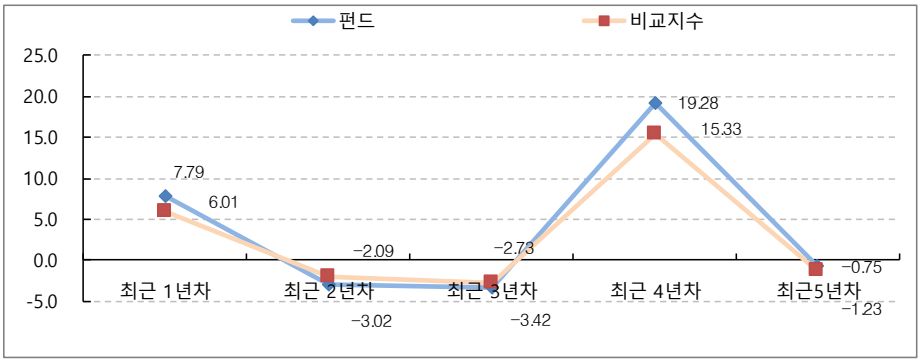
기간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3.03.01~ 2024.02.29	2022.03.01~ 2024.02.29	2021.03.01~ 2024.02.29	2019.03.01~ 2024.02.29	2003.02.24~ 2024.02.29
펀드	2003.02.24	7.79	2.24	0.32	3.63	5.54
비교지수		6.01	1.88	0.32	2.84	4.81
수익률 변동성		4.75	5.54	5.42	6.64	6.28

주1) 비교지수: KOSPI(30%)+KBP_MSB(7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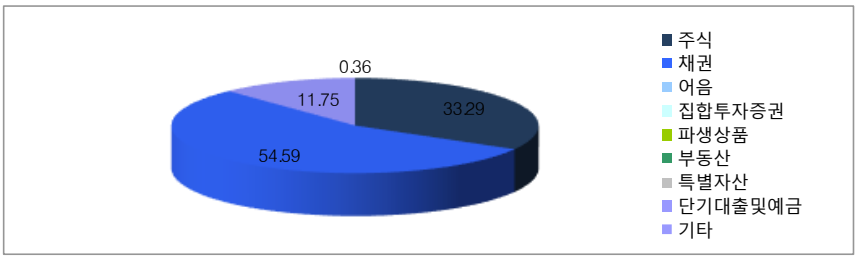
[단위:%]

기간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23.03.01~ 2024.02.29	2022.03.01~ 2023.02.28	2021.03.01~ 2022.02.28	2020.03.01~ 2021.02.28	2019.03.01~ 2020.02.29
펀드	2003.02.24	7.79	-3.02	-3.42	19.28	-0.75
비교지수		6.01	-2.09	-2.73	15.33	-1.23

주1) 비교지수: KOSPI(30%)+KBP_MSB(7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자산구성 현황



[2024.02.23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17.1	28.1	0.0	0.0	0.0	0.0	0.0	0.0	0.0	6.0	0.2	51.5
	(33.29)	(54.5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75)	(0.36)	(100.00)
KRW	17.1	28.1	0.0	0.0	0.0	0.0	0.0	0.0	0.0	6.0	0.2	51.5
	(33.29)	(54.5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75)	(0.36)	(100.00)

주1) ( ) 안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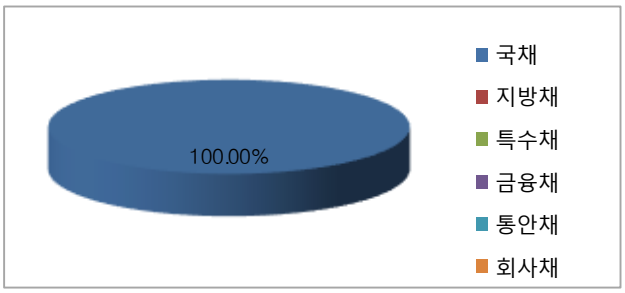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1)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현황

[2024.02.23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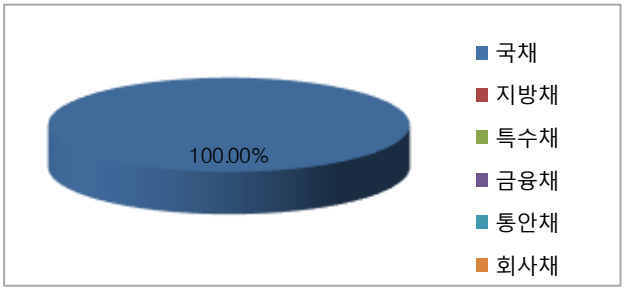
구분	금액	비중
국채	28	100.00%
지방채	-	0.00%
특수채	-	0.00%
금융채	-	0.00%
통안채	-	0.00%
회사채	-	0.00%
합계	28	100.00%



2)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2024.02.23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금액	비중
국채	28	100.00%
지방채	-	0.00%
특수채	-	0.00%
금융채	-	0.00%
통안채	-	0.00%
회사채	-	0.00%
합계	28	100.00%



3)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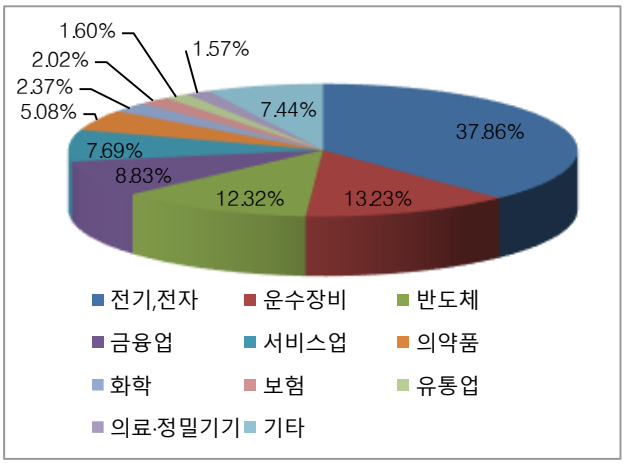
해당사항 없음

4)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2024.02.23 현재 / 단위 : 억원,%]

업종명	금액	비중
전기,전자	7	37.86%
운수장비	2	13.23%
반도체	2	12.32%
금융업	2	8.83%
서비스업	1	7.69%
의약품	1	5.08%
화학	0	2.37%
보험	0	2.02%
유통업	0	1.60%
의료·정밀기기	0	1.57%
기타	1	7.44%
합계	17	100.01%

주)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5)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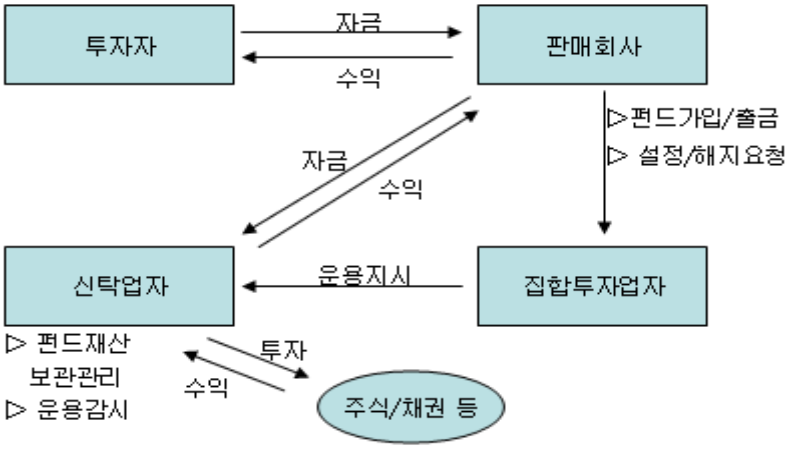
6)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7)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우리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1 37 층, 44 층 (02-2118-0500 www.wooriam.kr)
회사연혁	2000. 6. 운용사 설립허가 2000. 7. 동양오리온투신증권에서자산운용 부문 분리 설립 2000. 8. 영업개시 2000. 9. 투자자문업·일임업 등록 2009. 1. 관리자산 8.9 조원 2010. 4. 사명변경(구)동양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2019. 8. 사명변경(구)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 2021.10.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2024. 1.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
자본금	23,985,770,000 원
주요주주	우리금융지주 100%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 우리펀드서비스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②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③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④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억원)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항목	**22.12.31**	**21.12.31**	**항목**	**22.12.31**	**21.12.31**
유동 자산	398.9	430.4	영업수익	275.9	260.1
고정 자산	904.3	853.1	영업비용	213.7	175.1
자산 총계	**1,303.2**	**1,283.5**	**영업이익**	**62.2**	**85.0**
유동 부채	77.3	68.1	영업외수익	0.9	20.4
고정 부채	-	-	영업외비용	48.7	1.2
부채 총계	**77.3**	**68.1**	세전순이익	14.4	104.2
자본금	200	200	법인세비용	4.6	20.9
자본잉여금	121.1	121.1			
이익잉여금	898.5	888.7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	6.3	5.6			
자본총계	**1,225.9**	**1,215.4**	**당기순이익**	**9.8**	**83.3**

라. 운용자산규모

[2024.02.29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8,179	85,821	1,733	7,639	4,279	17,304	19,086	1,044	169,496	314,58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번지 (☏ 02-3702-3114)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tandardchartered.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⑩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여부 확인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0 길 17 우리금융상암센터 3 층, (우) 03921 (대표전화 02-3151-351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woorif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 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3215-14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4 층 (대표전화 02-399-335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회사명	NICE P&I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 4 층 (대표전화 02-398-39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nicepni.com

회사명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태화빌딩) 4층 (대표전화 : 02-721-53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 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소규모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89조제1항제5호 및 제192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보하며, 임의해지가 결정된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판매회사는 상환금등을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으로 표시한 경우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④ 법 제247조제5항에 정해진 사항

⑤ 그 밖에 법시행령 제270조제2항에 정해진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으로,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의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환매조건부 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